

연구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길운규*, 오경석**, 김서균***

I. 서론

2013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로 진화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 경제를 잇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차두원, 유지연, 2013). 세계는 장기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창조경제에 대해 주목하고, 본격적인 모색을 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창조경제 실현 방안으로 창업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ICT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고급 연구 인력의 기술창업이 창조 경제 실현의 핵심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 인력의 창업 생태계 참여 중요성을 밝히며, 독려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연구원, 대학, 기업을 모태로 수많은 벤처들이 배출되었다. 벤처 1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코스닥 시장과 함께 성장하였다. 모든 벤처는 아니더라도, 이 시기에 설립한 벤처 중 몇몇은 현재까지 남아 중견기업의 규모로 성장하는 등 한국의 경제전반에 활력소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벤처 붐이 약화되면서, 벤처 창업에 대한 열기도 사그라졌다. 또한, 벤처붐을 업고 창업했다가 실패한 선배들을 보며 전문 연구 인력들은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해결하고자 휴·겸직 제도 개선, 예비 창업단계에서의 지원금을 통한 부담 완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보유기술 출자 등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지만,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실제 연구원의 창업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원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먼저 연구원 창업과 관련된 법을 확인하고, 연구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연구원 창업과 법제 개선이라는 테마로 선행연구를 하였다. 3장에서는 현재 연구원 창업과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특징을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한계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맺었다.

* 길운규, UST, 정보통신기술경영학 석박사통합과정 (ETRI/UST연구생), 042-860-5391, hugh@etri.re.kr

** 오경석, ETRI, 선임연구원, verdi@etri.re.kr

*** 교신저자, 김서균, ETRI, 책임연구원, sk-kim@etri.re.kr

II. 선행 연구

1. 연구원 창업의 정의

창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 수행에 앞서,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연구원 창업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연구원 창업에 대한 정의의 근거는 연구기반 스피노프에서 찾을 수 있다. Klofsten and Jones-Evans (2000)는 스피노프를 “연구기관에서 발전된 지식, 기술, 연구결과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출된 신기업”으로 규정하였다. Clarysse et al. (2005)은 연구기반 스피노프를 “벤처 기업 중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직원에 의해 창업된 벤처기업으로서 신기술에 기반한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으로 규정하였다. De Cleyn and Braet(2009)는 연구기반 스피노프를 “모태조직으로부터 이전되거나 이차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에 의해 설립되고, 어떤 유형의 지식을 활용하고, 모태조직에 뿌리를 두고 신기업에 이전되는 새로운 법적 실체”로 좀 더 포괄적으로 개념화 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춘우, 김영수 (2005)가 교수 벤처와 연구원 벤처로 나누어 연구기반 스피노프를 정의하였다. 이춘우, 김영수의 연구에서는 연구원 벤처를 “국책 연구소나 대학연구소 또는 유관 연구소의 연구원이 연구직을 겸직 또는 휴직, 퇴직한 상태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반 스피노프를 연구원 벤처로 세분화하여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폭을 좁혀 이춘우, 김영수 (2005)의 연구와는 다르게 연구원 벤처에서의 “대학의 연구소 연구원 및 기업 연구원은 제외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주요 주체가 된 창업”을 연구원 창업으로 정의하였다.

2. 연구원 창업과 법제 연구

해외에서 연구원 창업의 성공을 위한 연구에서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 및 법/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Liu and White (2001), Shane (2004)은 연구기반 창업 기업의 성장에 정부 역할은 중요하며, 성과 창출에 정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Shane (2004)은 미국의 연구기관 스피노프가 Bayh Dole Act에 주요 자금을 받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Meyer (2003)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규정한 SBIR, STTR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상업적 잠재성을 가진 고위험의 연구개발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이 연구기반 스피노프의 성공과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Moray and Clarysse (2005)는 창업기업의 성과요인으로 공공연구기관의 특성, 제도적 맥락, 기술이전정책, 기업 형태간의 관계 등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원 창업 활성화와 정부, 법제 간의 관계 연구는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연구원 창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라는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이다. 먼저 연구원 창업을 주요 테마로 삼은 연구에서, 김석기(1996)는 연구원 창업을 위한 금융, 세제, 창업보육센터 운영, 마케팅, 기술개발 등의 지원 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용희(1998)는 창업지원제도를 해외와 비교하여 창업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였다. 한정화 외(2007)는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법제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김이수(2009)는 연구기반 스피노프의 성장에 대해 논의하며, 성장요소로서 정부정책을 포함하였다. 또한 박선영(2013)은 청년창업에 대해 연구하며 기술창업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지원 시책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창업을 연구 성과 확산의 한 갈래로 다룬 연구로서 이민형(2000)은 공공연구성과의 이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연구하였다. 최형애(2008)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에 관련된 국내외 법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준재(2007)는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에 대한 활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연구에서 기술사업화의 유형을 구분하여 창업을 다루었다. 금영섭(2010)은 공공기술 상용화를 위한 주요 법적 규율 체계 개선 및 지식재산 경영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K 출연(연)의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권 및 기술료 관련 법제 연구를 다루었다. 김희선(2010)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관련 법제를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승욱(2010)은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업화 지원 제도를 연구하여 연구개발 지원, 관리, 수행기관을 연계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현주(2011)는 국가공동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를 연구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해외문헌 연구를 통해 정부의 법/제도가 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문헌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연구원 창업을 연구 성과의 하나로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석기(1996), 지용희(1998), 한정화 외(2007) 등은 연구원 창업을 직접적으로 다루어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으나 법제 개선 방안이라기보다는 연구원 창업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데에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공공 연구기관 연구 성과의 확산’으로 포괄되는 기타의 논문에서 연구원 창업에 관해서 깊은 범위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원 창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연구원 창업과 관련된 법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끌어내는 바, 정부의 법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창업을 연구 성과로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및 기술 사업화와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연구를 수행했다는 의의가 있다.

III. 연구원 창업 관련 법제 현황

1. 법의 주요 내용

연구원 창업을 다루는 과학기술법령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다수의 법에서 연구원 창업의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법의 규율내용 분석 및 관련법령 유형을 분류한 윤종민(2012)의 연구에 따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R&D 성과관리 및 사업화 촉진”이라는 유형의 법령에 집중하여 연구원 창업 관련 법률의 현황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위의 연구에서 또 다른 유형으로 창업과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원 창업을 통해 R&D 결과물을 확산하고 촉진시킨다는 시각에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R&D 성과관리 및 사업화 촉진”의 유형으로 분류된 법률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윤종민(2012)의 분류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법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관계 법률의 명칭 및 주요 내용

법률의 명칭	주요 내용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1.28. 제정 ▪ 기술,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평가, 공공기술, 공공연구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 기술신탁관리업, 기술자산유동화,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등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의 확충 ▪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 기술평가체제 및 기술 신탁 관리 ▪ 보칙 및 벌칙
<p>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 관한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3.1. 제정 ▪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관,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평가, 특정평가, 연구성과 등의 정의 ▪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성과평가계획의 마련,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자체성과평가의 실시, 다른 평가와의 관계, 평가결과의 활용 등 ▪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연구성과DB 구축 등 ▪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지원 ▪ 성과평가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p>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 관한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7.28. 제정 ▪ 연구개발특구, 사업화, 첨단기술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연구소기업,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 입주기관 등 정의 ▪ 특구의 지정, 특구육성종합계획, 특구개발계획 ▪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산학연 교류 체계 구축 ▪ 특구 운영 성과 확산,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특구의 관리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
<p>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 협력촉진에관한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9.19. 산업교육진흥법 제정 → 2003. 9.1.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 → 2012.1.26.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 ▪ 산업교육, 산업교육기관, 산업교원, 산업자문, 산학연협력, 학연교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정의 ▪ 산업교육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험·실습시설 설치비, 운영비 등의 부담 ▪ 산학연협력의 촉진,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교직원·연구원의 겸·휴직, 인력 공동 활용 등

2. 종래 법의 현황

각각의 법률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조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본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¹⁾ 본 법의 뿌리는 2000년의 기술이전촉진법으로 2007년 전부 개정된 바 있으며, 2013년 타법개정을 거쳤다. 본 법은 연구개발 성과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됨에 따라 기술의 이전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연구기관별로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기술평가정보의 유통을 통하여 기술평가체제를 확립하고, 기술유통화 촉진사업의 실시 등 기술평가와 연계된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이준재, 2008).

본 법으로 말미암아 각종 정부연구개발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직접 기술사업화로 분류할 수 있는 창업 촉진에 가장 관계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의 법령이 포함되어 연구원 창업에 대한 지원 조치는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기타 직접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법률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본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에서 정의되는 연구성과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²⁾ 정부는 이러한 연구성과에 대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³⁾ 또한,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 사업 등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⁴⁾

본 법에서 정의된 연구성과에는 창업이 포함되며, 연구개발 사업 평가의 기관 평가에서 창업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설정되는 바, 연구원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창업은 연구성과의 결과물일 뿐, 창업지원을 위한 법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3)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본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⁵⁾ 본 법의 제 2조의 정의에서는 ‘사업화’,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1) 제1조

2) 제2조 8항

3) 제3조 6항

4) 제6조 1항

5) 제1조

명시하였다.⁶⁾ 이 특구 육성 종합계획에는 14가지의 사항이 포함되는 데 그 중,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⁷⁾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⁸⁾ 특히 연구소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출연연 및 대학 연구소 기업 설립의 뿌리가 되고 있다.⁹⁾ 최근 연구원 창업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었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본 법에 제시되어 있다.¹⁰⁾ 특구육성종합계획 외에도 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연구 활성화,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관한 조항을 통해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¹¹⁾

본 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성과물에 대해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등 특구내의 연구 성과물의 확산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간접적인 지원을 위한 조직도 마련하였다. 본 법에는 특히 ‘창업’과 관련된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소기업의 설립,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등이 규정되어, 연구기관 차원의 창업과 연구원 차원의 창업 둘 모두를 논의하고 있다.

4)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본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産學研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¹²⁾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산학연협력촉진의 중기·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산학연 간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¹³⁾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¹⁴⁾ 또한,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¹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이 창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치역할을 하고 있다.

본 법에서는 교육과 산학연 협력에 초점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연구원 차원의 창업을 다

6) 제6조 1항
 7) 제6조 2항
 8) 제8조 1항
 9) 제9조의 3-4항
 10) 제9조의 5
 11) 제48조
 12) 제1조
 13) 제4조 2항
 14) 제27조
 15) 제36조의 7

문다기보다는 대학 차원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산학연의 공동연구, 네트워킹 등 협력을 통해 나온 연구 결과물이 창업의 형태로 배출될 수 있다. 또한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을 다루어, 대학 내의 교수 및 연구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5) 출연(연) 원규

위에 제시한 4가지 법률 외에 출연(연)에서는 연구원의 창업을 도모하고자 원규를 통해 창업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출연(연)이 시행중인 대부분의 원규에는 휴직, 겸직 등의 인사와 자금 지원, 기술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2011)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기관마다 원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원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표 2> 출연(연) 창업 원규 구분 및 내용¹⁶⁾

구분		내용
창업지원규정		연구원 창업지원 규정, 연구소 기업 설립 및 지원 규정 등
휴직	휴직기간	1년, 3년, 5년 등 기간 지정 및 기간 연장
	자격조건	정직원, 직원, 3년/5년 이상 재직한 지원 등
	보수지급	무급, 유급
	허가권자	위원회 심의 후 원장 승인
겸직	겸직기간	1년, 2년, 5년,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 등
	자격조건	연구소기업의 성공에 참여가 필요한 인력, 5년이상 근속
	보수지급	무급, 유급, 목표대비 달성률에 따른 지급 등
	허가권자	인사위원회 심의 통한 원장 승인, 인사위원회, 원장 등
복직		인사규정 적용, 1회 한하여 복직 허용, 신분상 불이익 없음 등
자금지원		직접적 자금 지원 가능 여부, 원내 자본 모집, 연구소기업을 통한 현금 출자, 창업관련 연구 시설 이용 시 할인 등
기술지원		보유기술 사용권 (유상/무상/전용실시 등), 연구장비 및 생산시설 지원, 시험 및 검사, 시제품 제작, 기술 정보 제공 등
입지지원		연구원 BI시설 입주, 연구원 제반시설 사용 편의 제공, 기관출입 및 입지 관련 제반 이용료 할인

16) 생명연, 표준연, ETRI, KISTI, 생기연, 원자력안전기술연, 기계연의 원규로 구성

기타	연구원 소류 편의시설 사용, 창업자 외에 연구원직원을 창업기업에 파견 또는 겸직 근무, 창업자가 퇴직 기후 재임용 희망 시 우선고려, 연구원 홍보매체 통한 창업기업 홍보, 창업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연구원 간행물에 창업기업 광고 무상 게재 등
----	--

* 출처: 중소기업연구원(2011)의 연구에서 재가공.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기관 각각의 원규들은 창업에 관해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사, 자금, 기술, 입지 지원에 이르기까지 연구원마다의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기초, 응용, 개발 등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격에 따라 창업 관련 규정도 다르게 제시될 수는 있지만, 연구원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논제들을 꺼내어 다듬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연구원(2011)의 연구에서는 출연연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통 원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출연(연) 연구원 창업의 공통 원규는 창업에 대해 하나의 틀을 구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통원규를 통해서도 연구기관 각각의 창업자에 대한 지원 폭이 좁아지거나, 고유의 색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IV. 법률의 한계 및 개선 방안

1) 법률 및 원규의 한계

이상의 법률적 조항 및 출연(연) 원규에서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① 연구원 창업이 가장 깊게 관여되어 있는 법률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과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다. 그러나 위의 두 법률은 물론이고 기타의 법률에서도 창업의 비중이 무겁게 다루지지 못하고 있다. 위의 양 법률 모두 연구원 창업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기술사업화의 한 갈래로서 창업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연구원 창업을 기술이전 혹은 기술사업화 달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여기고 있다. 또한 성과 확산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기술료, 기술지주회사, 연구소기업 등 여타의 성과확산 및 촉진을 위한 방법들과 비교하여 연구원 창업에 대한 조항은 법률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있다.

② 연구원 창업에 관한 법률 조항들과 현재의 분위기 사이에 괴리가 있다. 먼저 이미 반영된 법률의 경우, 연구원 창업의 급감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연대보증제도 폐지, 휴·겸직 제도, 발명자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대처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여기에서 하나의 괴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창조경제 실현방안으로 창업이 거론된 이후,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개발 성과를 기초로 하는 연구원 창업 활성화/촉진 등의 내용이 법률에 담겨 있지 않다. 즉, 미비된 법률로 인해 현재의 연구원 창업 활성화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괴리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우선 연구기관마다 운영하고 있는 창업 원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창업 규정에 대한 연구기관간의 차이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연구원에게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법률과 비교하여 원규의 법적 지위 및 효력이 약하다. 원규 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차후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문제가 생길 때에, 원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계약직원이 창업을 한다고 하였을 경우, 원규 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차후의 상황에 따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원규만으로 연구원이 창업을 실행하기 위한 버팀목이 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원규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의 자신의 기관을 지키기 위해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바,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창업을 생각하는 데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제 E 연구기관에서는 계약직의 창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노무사의 자문 결과, 원규상의 문제는 없으나 차후 기간제법과 충돌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결국, 계약직 연구원의 창업은 무위로 돌아갔고, 기관차원의 창업은 기간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결국 창업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창업에 관한 규정을 원규라는 틀에 담아서 실현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2) 개선 방안

이상의 연구에서 아래와 같이 개선 방안을 정리할 수 있다.

(1) 연구원 창업 관련 법 비중 확대

한계점에 제시한 ①과 ③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원 창업과 관련된 조항이 충분히 다루지지 않고 있으므로 연구원 창업 관련 조항을 비중 있게 다루어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미 관련법에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연구개발 성과 확산의 한 갈래로 창업을 다루는 것은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원 창업을 독립적으로 다루어 연구원 창업의 지위를 높일 필요가 있

다. 또한 여타의 기술료, 기술지주회사, 연구소기업 등과 비교하여 연구원 창업은 법률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연구원 창업에 관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연구기관의 원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항을 구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2) 연구원 창업 관련법의 내용 구성 개선

한계점에 제시한 ②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원 창업 관련법의 내용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 즉, 법률에 구성된 내용의 폭을 넓히되, 실효성 있는 내용들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법률에 연구원 창업과 관련하여 담겨 있는 내용은 연구원의 휴·겸직, 발명자 기여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에 국한되어 있다. 창업 아이디어의 현실화를 가로 막는 장애물을 걸러내고, 독려할 수 있는 법률적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일례로 계약직 연구원의 창업, 외부 아이디어와 연구원 기술 융합 창업 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활성화시킬만한 내용의 법률적 보완은 창업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벤처붐이 꺼진 이후 연구원 창업은 급감하는데 그 시기를 분석하여, 일관성있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 보강을 한다면, 과거의 사례를 통한 법률 보완으로 연구원 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의 적절하게 법률상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공통/비공통 원규 제정 및 기존 원규 활용

한계점에 제시한 ③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비공통 원규 제정 및 기존 원규를 활용하여 창업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기관 창업 관련 원규는 차이가 극심하였다. 이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기관 공통원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공통원규를 통해 연구기관간의 차별을 없애는 등 이점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각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유형 및 성격에 맞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응용/개발의 연구개발 유형, 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차별화를 둘 수 있도록, 공통원규와 비공통원규의 제정을 제안한다. 이는 공통원규를 통해 연구원 창업을 시행하고, 비공통원규를 통해 각 연구기관별로 창업 지원을 차별화하는 의미이다. 또한 기존 원규를 활용하여 연구원 창업 관련법의 비중을 확대하고 내용을 개선하는 데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원규의 내용을 법률상에 반영함으로써, 법률 안에서 창업의 비중도 강화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V. 결론

국가적으로 창업을 비중 있게 다루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연구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창업 문화에 대한 분위기가 부정적이다. 창업 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지만, 현재 법률에는 창업에 대한 비중이 아주 작거나, 연구 성과 확산의 한 갈래로서만 다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관의 창업과 관련된 네 가지 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률 안에 연구원 창업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한 갈래로서 포괄적이고 가볍게 다루지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연구원 창업을 다룬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시의적절하지 못하거나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연구기관 각각의 원규에서 창업이 다루지고는 있으나, 이는 자유로운 창업을 저해하는 보수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원 창업 관련법의 비중을 확대하고 새로운 내용을 구성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원 창업을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의 한 갈래가 아닌 연구원 창업 자체만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창업의 비중을 강화해야한다는 면에서 창업 문화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원 창업의 기준이 되고 있는 원규를 다듬어 법

률로 격상시킴으로써 법률과 원규의 충돌을 방지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창업이 발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원화된 원규 수립을 통해 창업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관의 창업 관련 지원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을 뿐,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지는 못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연구원 창업과 관련된 이슈들을 선정하고, 이를 다듬어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거론된 법 이외에도 연구원 창업과 상충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기간제및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을 연구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 본 법안을 함께 연구하여, 법률 간의 상충관계를 따져 연구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출연(연)의 공통원규와 함께 연구기관별 창업 관련 원규를 기초/응용의 성격에 맞게 제안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기관 유형에 맞는 모델을 제안한다면 본 연구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금영섭 (2010), “공공기술 상용화를 위한 주요 법적 규율 체계 개선 및 지식재산경영 전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갑수, 곽창규 (2004), “출연(연) 연구인력의 유동시스템 - 외부연구인력의 유입실태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석기 (199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지 연구원 창업지원방안”, 기술교육연구지, vol.4, 15-31.
- 김이수 (2009), “연구기반 스피노프 성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연구, 10(2), 63-85.
- 김희선 (2010), “공공기술이전 법제 및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머니투데이 (2013), “연구원 창업활성화? 인사 규정 개선부터”, (2013.05.13.)
- 박승욱, 홍진원, 김미화 (2010), “R&D 기술 성과물의 상업화 지원 제도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5(2), 59-88.
- 윤종민 (2012),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개편 방향”, 기술혁신학회지, 15(4), 881-915.
- 이민형 (2000), “공공연구성과의 이전 현황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장재, 이강춘 (2011),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정부출연(연)의 대응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6), 26-45.
- 이준재 (2008), “공공연구기관 특허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춘우, 김영수 (2005), “한국 교수/연구원 창업벤처생태계의 특징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2005, 1-35.
- 이현주 (2011), “국가공동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강욱 (2009), “연구기반 스피노프 벤처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관한 연구”, 한국상품학회, 27(1), 165-182.
- 중소기업연구원(2011),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2012), “대학·연구기관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창업친화적 제도 설계 및 정책과제 도출”
- 지용희 (1998), “창업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창업활성화 방안”, 서강경영논총, 9(1), 485-499.

- 차두원, 유지연 (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최형애 (20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정화, 이춘우, 김영수 (2007), “한국 교수, 연구원 창업벤처생태계의 특징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29(3), 99-117.
- Clarysse, B., Wright, M., Lockett, A., Van de Velde, E., Vohora, A. (2005) Spinning out new ventures: A typology of incubation strategies from European research institu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2), 183-216.
- De Cleyn, S.H., Braet, J. (2009) Research valorisation through spin-off ventures: Integration of existing concepts and typologies, *World Review of Entrepreneurship,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5(4), 325-332.
- Klofsten, M., Jones-Evans, D. (2000) Comparing Academic Entrepreneurship in Europe -The Case of Sweden and Ireland, *Small Business Economics*, 14(4), 299-309.
- Liu, X., White, S. (2001) Comparing innovation systems: a framework and application to China's transitional context, *Research Policy*, 30(7), 1091-1114.
- Meyer, M. (2003) Academic entrepreneurs or entrepreneurial academics? Research-based ventures and public support mechanisms, *R&D Management*, 33(2), 107-115.
- Moray, N., Clarysse, B. (2005) Institutional change and resource endowments to science-based entrepreneurial firms, *Research Policy*, 34(7), 1010-1027.
- Shane, S. (2004), *A general theory of entrepreneurship: The individual-opportunity nexus*, Edward Elgar Pub.